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50호 2014. 8. 7.(목)

조례 정정 공포

- 사천시 조례 제1098호 [사천시 도시계획조례] 공포문 정정 공포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50호(2)

정정 공포

사천시 조례 제1098호

[사천시 도시계획조례] 공포문 정정 공포

2014. 7. 10 사천시 공고 2014-345호로 공포한 [사천시 도시계획조례] 를
붙임과 같이 정정 공포 합니다

2014. 8.

사 천 시 장

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정정 공포문

자치법규 정정 공포

정 정 전	정 정 후	비 고
<p>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 중 “제22조” 를 “제22조의2” 로 “국토교통부장관” 을 “경상남도지사” 로 각각 한다.</p> <p>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산정방법은” 을 “산정방법 및 구역은” 으로 한다.</p> <p><u>제23조제5호</u>, 제24조제4호, 제25조제4호 중 “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” 을 “정신병원, 격리병원” 으로 각각 한다.</p> <p>제35조제8호, 제36조제9호, 제38조제9호, 제43조제11호, 제44조제12호 중 “식품공장” 을 “식품공장(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)” 으로 각각 한다.</p> <p>제68조제1항 중 “기본 2면에 대하여 1천원으로 하고, 추가되는 한 면당 100원의 수수료를 가산한다.” 를 “「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에 따른다.” 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23조제5호 ⇒ 삭제</p>	<p>공포345호 (2014. 7. 10)</p>